

#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소양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589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8월 11일  
발 의 자 : 김소양 의원(1명)  
찬 성 자 : 권수정, 김소영, 김진수,  
김화숙, 박기열, 봉양순,  
성중기, 신정호, 여·명,  
오현정, 이석주, 이성배,  
이승미, 이종환, 홍성룡  
의원(15명)

## 1. 제안이유
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9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에 근거하여 중증 장애인 세대의 수도요금 감면 시행을 통하여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
현행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, 독립유공자와 유족 등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에 대한 감면 규정은 없음  
서울특별시 차원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장애인 복지정책을 추진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하고자함 (안 제31조제1항제12호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장애인복지법」 등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제1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2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
부 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제31조(수도요금의 감면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1호~11호 (생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31조(수도요금의 감면) ① ----- ----- ----- --.</p> <p>1호~11호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12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</u></p>
<p>12.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</p>	<p><u>13.</u>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</p>

문서번호	2021080900000012
------	------------------

## 비용추계서

요청인 : 김소양 의원	담당 : 조도형 과장 이원상 팀장 박주용 예산분석관
접수일 : 2021.08.09	
회신일 : 2021.08.10	내용문의 : 02-2180-7954

###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#### 목 차

- I. 비용추계 요약
- 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

## I. 비용추계 요약

#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1조(수도요금의 감면)제1항제12호 신설에 따라 세입감소 발생

### 2. 비용추계의 전제

#### 가. 대상

- 안 제31조제1항제12호의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대하여 수도 요금을 감면

#### 나. 전제

- 면제대상이 되는 중증장애인 세대수는 2020년 한국전력 ‘서울지역 중증장애인 전기요금 할인세대(’20.1~12월)’ 평균으로 추계하되 비용추계기간 동안 변동이 없는 것으로 전제
- 월 감면 사용량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독립유공자 수도요금 감면 사용량인 10세제곱미터로 전제

#### 다. 추계기간

- 2022~2026년으로 함(비용추계기간 이후에도 발생)

### 3. 비용추계의 결과

- 총 비용 ≒ 34,847,902천원

(단위 : 천원)

구분		연도	2022	2023	2024	2025	2026	합계
세입	중증장애인 감면 (안 제31조제1항제12호)		△5,973,926	△7,218,494	△7,218,494	△7,218,494	△7,218,494	△34,847,902
	소계 (a)		△5,973,926	△7,218,494	△7,218,494	△7,218,494	△7,218,494	△34,847,902
세출	-		-	-	-	-	-	-
	소계 (b)		-	-	-	-	-	-
□ 총 비용 (b-a)			5,973,926	7,218,494	7,218,494	7,218,494	7,218,494	34,847,902

### 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     예산정책담당관  
 담    당    관      조도형  
 추계세제팀장      이원상  
 예 산 분 석 관      박주용

☎ 02-2180-7954

e-mail : pjooyong@seoul.go.kr

## 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### 1. 비용요소

-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1조(감면)제1항제12호 신설에 따라 세입감소 발생

### 2. 세부추계내역

- 중증장애인 세대 감면 = 34,847,902천원
  - = 중증장애인 세대수×감면량(m<sup>3</sup>)×수도요금(원/m<sup>3</sup>)×12월×5년
  - = 5,973,926천원×1년(2022년)+7,218,494천원×4년(2023~2026년)
  - 2022년 감면액 = 103,714세대×10m<sup>3</sup>×480원/m<sup>3</sup>×12월 = 5,973,926천원
  - 2023년 감면액 = 103,714세대×10m<sup>3</sup>×580원/m<sup>3</sup>×12월 = 7,218,494천원
  - 2024년 감면액 = 103,714세대×10m<sup>3</sup>×580원/m<sup>3</sup>×12월 = 7,218,494천원
  - 2025년 감면액 = 103,714세대×10m<sup>3</sup>×580원/m<sup>3</sup>×12월 = 7,218,494천원
  - 2026년 감면액 = 103,714세대×10m<sup>3</sup>×580원/m<sup>3</sup>×12월 = 7,218,494천원
- ※ 「서울특별시 수도 조례」 [별표 2]에 따라 m<sup>3</sup>당 가정용 수도요금은 2022년은 480원, 2023년부터 580원 적용
- ※ 중증장애인 세대수 : 2020년 한국전력 ‘서울지역 중증장애인 전기요금 할인세대(’20.1~12월)’ 평균